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1. 제안이유

「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」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3. 12. 31.字로 만료 됨에 따라, 사업의 안정적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「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 규 정에 따라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보고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현황

시설명	개관일	소재지	규모	공간구성	운영인력
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	2020.11.17.	시흥대로 12길 10-5	연면적 1,710㎡ (지상 1~3층)	1층 : 목욕탕 2층 : 박미보건지소 꿈꾸는작은도서관, 3층 : 사흥동자화관	9명 (총괄1, 시설관리, 운영, 매표2, 탕)

※ 코로나19로 인해 사우나는 22년 7월 개관

나. 위탁현황

1)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3. 12. 31.(2년)

※ 최초위탁 2020.7.16. ~ 2021.12.31.(1년 6개월)

2) 수탁기관: 시흥3동주민자치회

3) 운영인력 : 9명(총괄1, 시설관리1, 운영1, 매표2, 탕4 명)

4) 위탁사무

- 가) 목욕시설 재정 및 운영관리 사무
- 나) 편익시설 전체 시설 관리 사무
- 다)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'구', '자치회'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
- 5) 위탁금액: 229,857천원

다. 재계약 내용

1)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5. 12. 31.(2년)

2) 수탁기관: 시흥3동주민자치회

3) 운영인력 : 9명(총괄1, 시설관리1, 운영1, 매표2, 탕4 명)

4) 위탁사무

- 가) 목욕시설 재정 및 운영관리 사무
- 나) 편익시설 전체 시설 관리 사무
- 다)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'구', '자치회'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
- 5) 주요 변경내용

구	분	기 존	변 경	
위탁기간		2022.1.1. ~ 2023.12.31.[2년간]	2024.1.1. ~ 2025.12.31.[2년간]	
인	력	9명(총괄1, 시설관리1, 운영1, 매표2, 탕4명)	좌 동	
위탁사무		목욕시설 등 편익시설 전체 시설 관라운영 등	좌 동	
수탁기관		시흥3동주민자치회	좌 동	
공	간	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(금천구 시흥대로 12길 10-5)	좌 동	
예	산	229,857천원	252,465천원(미정)	

3. 재계약 사유

가. 재계약 추진 필요성

- 1) 시흥3동주민자치회는 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개관 이후 현재까지, 시설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
- 2) 매월 위탁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, 연간 계획에 따라 원활한 위탁 사업을 추진중임
- 3)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, 그간의 운영성과가 양호하며 민간위탁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이 필요

나.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: 적정(87점)

- 1) 성과평가 개요
 - 추진근거 :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(성과평가)
 - 평가기간 : 2023. 9. 14. ~ 9. 15.
 - 평가대상 : 시흥3동 주민자치회
 - 평가내용 :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- 평가항목
 - ▶공통분야: 사업운영비전, 재정운영효율성, 조직운영효율성, 사회적가치, 주민만족도
 - ▶개별분야: 사업운영, 시설관리, 개선노력

- 평가방법 : 평가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평가
- 2) 평가결과 : 87점(우수) ⇒ 재위탁 추진

4. 관계법령

- 1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

관계 법 령

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-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- 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(유영)

- ① 주민편익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.
- ② 구청장은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자치회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